심사보고서

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271 2019. 10. 25.(금) 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8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0월 17일

-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안석영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○ 매년 늘어나는 건강검진 수요에 맞춰 협소하고 노후화된 기존 검진센 터를 개·보수하고 의료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 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형 검진센터를 증축하고자하며,

의료원 별관동 3층 사무실을 개조한 현재 간호사 기숙사는 노후되고 화장실, 샤워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상황으로 증축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과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

- 조령산자연휴양림은 1993년 조성한 초창기 휴양림으로 당시 건축한 통 나무집 형태의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이용객의 안전우 려 및 시설물 운영관리 어려움으로 이를 개축하여 특색 있는 산림 휴양 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이며
- 매년 감소되는 산림면적 확보를 통해 대단위 도유림 경영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산림보존 관리 정책 실현과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, 미세먼지 저감, 산림휴양·복지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사유토지를 연차적으로('19년~22년 500ha)매입하려함
- O 율량119안전센터 청사의 협소함 및 노후화, 주택가에 위치하여 차량 장비 조작 및 전술훈련이 어려움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
- 옥산면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아파트 조성 등에 따른 안전센터로의 승격 및 옥산면사무소 이전 계획에 따른 옥산119지역대(면사무소 내 위 치)를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 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<재산의 취득>

①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

O 위 치 :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(사직동) 청주의료원 내

○ 사업기간 : 2020. 1. ~ 2021. 12.(2년)

O 규 모 : 4,781.04m²(증축 4,199.42m², 개·보수 581.62m²)

O 사 업 비 : 10,000백만원(국비50%, 도비50%)

② 2020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물 철거 및 개축

○위 치: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-1번지

○ 사업기간 : 2020. 1. ~ 12.

O 규 모: 16동 514㎡

O 사 업 비 : 3,300백만원(균특50%, 도비50%)

③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

○ 위 치 :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 산22-1 외 21필지

○ 사업기간 : 2020. 1. ~ 12.

O 규 모: 112ha

○ 사 업 비 : 3,000백만원(도비 100%)

④ 율량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

○ 위 치: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91-12번지 일원(밀레니엄타운 부지 내)

O 사업기간: 2020. ~ 2021.

○ 신축규모: 1,000㎡(1개동, 지하1층, 지상3층)

O 사 업 비 : 2,543백만원(소방안전교부세)

⑤ 옥산119안전센터 신축

O 위 치: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65일원

○ 사업기간 : 2020. ~ 2021.

○ 신축규모: 990m²(1개동, 지상3층), 부지면적 2,000m²

○ 사 업 비 : 2,530백만원(도비 100%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: 곽영학)

- O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
- O 첫째,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의 건은
 -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자는 2015년 85,450명에서 2018년 11 4,140명으로 증가하였으며, 장애인의 건강검진 시 시설의 불 편함이 있어 국비 50억원, 도비 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강검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,
 - 현재 간호사 기숙사 12실이 구비되어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 및 화장실과 샤워실의 공동사용으로 9명만 이용 중에 있으며, 의사의 경우 주변 오피스텔 9채를 임차하여 숙소를 제공하고 있어 임차비용의 절약 및 응급상황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어 바람직한 증축으로 판단됨.
 - 다만, 건축시 주차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원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 성이 있음.
- 둘째, 2020년 조령산휴양림 시설물 철거 및 개축의 건은
 - 현재의 휴양림 숙박시설은 목구조 통나무집으로 되어 있어 내부에 곰팡이 등으로 인해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, 매점·화장실 등의 공동이용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 이용객의 불편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.
 - 따라서 국비(균형발전특별회계) 16억5천만원과 도비 16억5 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여 이용객 만족도 향상 및 특색있 는 휴양시설 확충을 통해 다시찾고 싶은 휴양림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- O 셋째,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의 건은
 - 현재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19년 30억원의 도유림을 매입하였으며, 2020년에도 30억원의 도유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도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,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산림부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O 넷째, 율량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의 건은

- 현재의 율량119안전센터는 1990년 1월 건축된 것으로 29년
 이 경과하여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근무환경이 열악하며, 율량2지구 개발사업 등 소방수요 증가와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안전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율량119안전센터의 이전 신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및
 훈련여건 개선과 안전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소방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.

O 다섯째,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의 건은

- 옥산면은 오창과학단지, 옥산산업단지,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시설의 입주와 공공주택단지 조성으로 2,500여세대의 고층아파트 단지 입주 및 추가건설로 소방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바 옥산119지역대를 옥산119안전센터로 승격하고, 옥산119안전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재난·재해 발생 시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소방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「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」

의안번호	제 271 호				
의 결	년 월 일				
연 월 일	(제 회)				

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9년 10월 08일

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 안 번 호 제 271 호 제출연월일 : 2019년 10월 08일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○ 매년 늘어나는 건강검진 수요에 맞춰 협소하고 노후화된 기존 검진센터를 개·보수하고 의료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형 검진센터를 증축하고자하며,

의료원 별관동 3층 사무실을 개조한 현재 간호사 기숙사는 노후되고 화장실, 샤워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상황으로 증축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과 근로자 근무환경 개 선을 추진하고자 함

- 조령산자연휴양림은 1993년 조성한 초창기 휴양림으로 당시 건축한 통 나무집 형태의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이용객의 안전 우려 및 시설물 운영관리 어려움으로 이를 개축하여 특색 있는 산림 휴 양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이며
- 매년 감소되는 산림면적 확보를 통해 대단위 도유림 경영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산림보존·관리 정책 실현과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, 미세먼지 저감, 산림휴양·복지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사유토지를 연차적으로('19년~22년 500ha)매입하려함
- 율량119안전센터 청사의 협소함 및 노후화, 주택가에 위치하여 차량 장비 조작 및 전술훈련이 어려움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소방장비의 효 율적인 관리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
- 옥산면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아파트 조성 등에 따른 안전센터로 의 승격 및 옥산면사무소 이전 계획에 따른 옥산119지역대(면사무소 내 위치)를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

○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.

2. 주요내용

□ 재산의 취득

《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》

○ 위 치 :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(사직동) 청주의료원 내

○ 사업기간 : 2020. 1. ~ 2021. 12.(2년)

○ 규 모 : 4,781.04 m² (증축 4,199.42 m², 개·보수 581.62 m²)

○ 사 업 비 : 10,000백만원(국비50%, 도비50%)

《2020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물 철거 및 개축》

○ 위 치 :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-1번지

○ 사업기간 : 2020. 1. ~ 12.

○ 규 모 : 16동 514 m²

○ 사 업 비 : 3,300백만원(균특50%, 도비50%)

《도유림 행정재산 취득》

○ 위 치 :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 산22-1 외 21필지

○ 사업기간 : 2020. 1. ~ 12.

○ 규 모: 112ha

○ 사 업 비 : 3,000백만원(도비 100%)

《율량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》

○ 위 치 :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91-12번지 일원(밀레니엄타운 부지 내)

○ 사업기간 : 2020. ~ 2021.

○ 신축규모 : 1,000㎡(1개동, 지하1층, 지상3층)

○ 사 업 비 : 2,543백만원(소방안전교부세)

《옥산119안전센터 신축》

○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65일원

○ 사업기간 : 2020. ~ 2021.

○ 신축규모 : 990 m² (1개동, 지상3층), 부지면적 2,000 m²

○ 사 업 비 : 2,530백만원(도비 100%)

3.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: 별첨

4. 관계법령 : 별첨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, 제14조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

공유재산관리계획

2020년도 관리계획총괄표(14-1)

○ 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건, m², 천원)

○ 외계명		• 교	반외계						(단위 : 건, m, 전원)		
_	7	분	당 초			변 경			합계		
		亡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
		토지	1	1,120,061	3,000,000				1	1,120,061	3,000,000
	계	건물	4	7,285.04	18,372,657				4	7,285.04	18,372,657
		기타									
취	픕	토지	1	1,120,061	3,000,000				1	1,120,061	3,000,000
"'		건물	4	7,285.04	18,372,657				4	7,285.04	18,372,657
	입	기타									
	교	토지									
득		건물									
	환	기타									
	기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타	기타									
		토지									
	계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매	토지									
처	٦L	건물									
	각	기타									
	야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분	여	기타									
世	교	토지									
	환	건물									
		기타 토지									
	기	건물									
	타	기타									
	•										

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14-2)

○ 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건, m², 천원)

	ン 외세 S · 틸반외세 (단취 : 선, Ⅲ, 선ㅋ									
일련		재 산 표 시		추정가액	취 득 시 기	취득사유	취득재산	비고		
번호	지목	소 재 지	면적	, 5 , 1	시 기	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	전소유자	,		
	토지	1	1,120,061	3,000,000						
계	건물	4	7,285.04	18,372,657						
	기타									
		제천시 백운면 모정리 산22-1	785,766	1,014,831	2020	도유림 확대조성	이남주 외 2	매입		
		과신군 소수면 수리 신 2 0	312,595	610,277	"	"	윤창호	"		
	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산42	5,170	186,339	"	"	고건필	"		
	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40	344	28,930	"	"	이규창	"		
	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42	1,128	98,251	"	"	지병권	"		
	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374	346	35,334	"	"	여형준	"		
	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39	769	66,982	"	"	김옥녀	"		
	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41	1,228	103,273	"	"	손성배	"		
	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43	1,231	135,323	"	"	지병권	"		
	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44	1,228	191,793	"	"	한의남	"		
1	토지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56-1	2,479	148,915	"	"	홍삼숙	"		
1	노시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60-2	377	17,664	"	"	홍의범	"		
	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62-1	982	44,832	"	"	홍의범	"		
	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643	546	23,943	"	"	김홍순	"		
	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65-6	466	17,636	"	"	오진석	"		
	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65-9	228	8,902	"	"	오진석	"		
	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65-10	2,727	111,392	"	"	김용예	"		
	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70-1	172	8,266	"	"	서수남	"		
	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70-3	264	12,370	"	"	서수남	"		
	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38-1	1,651	104,135	"	"	고건필	"		
	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38-2	40	3,364	"	"	여형준	"		
		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38-3	324	27,248	"	"	고건필	"		

일련		재 산 표 시			취 득	2500	취득재산	비고
번호	지목	소 재 지	면 적	추정가액	취 득 시 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전소유자	
2	토지							
	건물	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(청주의료원 부지 내) 4,781.04	10,000,000	2021	건강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측	-	<u> </u>
	기타							
	토지							
3	건물	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-1	514	3,300,000	2020	조령산자연휴양림 개축	충청북도	개축
	기타							
	토지							
4	건물	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91-12(밀레니엄타운 내)	1,000	2,542,583	2021	율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	-	신축
	기타							
	토지							
5	건물	청주시 홍덕구 옥산면 가락리 265	990	2,530,074	2021	옥산119안전센터 신축	-	신축
	기타							

관계 법령 발췌

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같은 법 시행령】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-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① 지방자치단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제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 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 의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-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.
 -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- 『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명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-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- 가. 취득의 경우 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 의 경우에는 10억원)
-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-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2.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

【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】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

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 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 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(이하"도의 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4. 공유재산매수요구서(별지 제18호 서식)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 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 을 받아야 한다.

-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 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 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 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서)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

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제28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)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

- 1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제15호 서식)
- 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 2. 공유재산매매계약서(별지 제16호 서식)
 - 3. 양여계약서(별지 제17호 서식)

 - 5. 교환계약서 (별지 제19호 서식)